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47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고독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고, 추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상 명시된 고독사의 정의를 따르도록 개정(안 제2조제1호)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2024년 2월 6일자로 정부가 공포한 바, 그 개정내용을 보면 고독사 정의 시점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때’에서 ‘임종 시’로 변경한 것임.(안 제2조)

<표-1> 법 개정내용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u>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u>임종하는 것</u> ----- ---

- 개정전의 법은 ‘고독사’를 정의내림에 있어서 ①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②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③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임종 시에 타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독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홀로 임종을 맞은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어야 고독사로 인정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시·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단순 누적)	연평균 증가율
계	2,412	3,048	2,949	3,279	3,378	15,066	8.8
서울	437	595	526	571	619	2,748	9.1
부산	219	291	254	315	329	1,408	10.7
대구	85	117	105	125	124	556	9.9
인천	158	220	190	248	248	1,064	11.9
광주	105	104	113	118	111	551	1.4
대전	56	95	113	120	128	512	23.0
울산	54	55	42	59	58	268	1.8
세종	10	8	11	12	13	54	6.8
경기	512	632	650	678	713	3,185	8.6
강원	67	90	102	98	110	467	13.2
충북	67	97	70	98	93	425	8.5
충남	151	151	167	193	175	837	3.8
전북	87	125	112	143	106	573	5.1
전남	77	87	101	114	124	503	12.7
경북	116	155	141	135	180	727	11.6
경남	199	214	240	225	203	1,081	0.5
제주	12	12	12	27	44	107	38.4

- 개정전의 법에 따르면 고독사의 정의 조건에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라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고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상황이었음.
-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고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고독사의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고독사 예방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조례 반영(안 제2조제1호)

<표-3> 조례 개정안 대비표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에 있어서 법 개정내용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은 앞으로 법 개정예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용조항으로 개정하여 제출하였음.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조례 관리상의 효율성과 법률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
----------	-----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고독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고, 추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상 명시된 고독사의 정의를 따르도록 개정(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사업(57,6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사업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8급 김보은(02-3423-5793)